

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648
----------	--------

제안년월일 : 2023년 4월 26일
제안자 : 기획경제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과학관의 관람료 감면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시민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, 과학관 관장에게 위임하는 시장의 권한을 과학관 운영에 필요한 범위로 제한하고자 함.

2. 수정의 주요 내용

- 관람료 감면 대상을 기초생활수급자,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, 과학의 날 · 어린이 날 · 문화가 있는 날 방문객 등으로 구체화함(안 제6조).
- 과학관 관장에게 위임하는 시장의 권한을 개관 및 휴관, 관람료 감면, 대관 허가와 대관료 감면, 대관에 관한 권리의 양도 승인, 판매시설 등의 설치 · 운영으로 제한함(안 제18조).

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6조제1항에 제9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9.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라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
 10.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및 카드에 등재된 가족
 11. 과학의 날·어린이 날·문화가 있는 날 방문객
 12. 그 밖에 과학관 운영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
- ② 시장은 과학관 관람객 증대, 공공목적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.
1.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의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고,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차상위계층
 2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5조의 적용을 받는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
 3. 「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7조에 따라 과학기술 유공자로 지정된 사람
 4. 그 밖에 과학관 운영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

안 제18조 제목 외의 부분 중 “권한”을 “권한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권한”으로 하고,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개관 및 휴관
2. 제6조에 따른 관람료 감면
3. 제10조에 따른 대관허가
4. 제12조에 따른 대관료 감면
5. 제13조제2항에 따른 대관에 관한 권리의 양도 승인
6. 제14조에 따른 판매시설 등의 설치·운영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p>제6조(관람료 감면)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다</p> <p>1. ~ 8. (생략)</p> <p><신설></p> <p><신설></p> <p><신설></p> <p>9. 그 밖에 과학관 운영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</p> <p>② <u>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(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기업부장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)으로 관람료를 결제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100분의 30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.</u> [조례 제7108호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2항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]</p> <p><신설></p>	<p>제6조(관람료 감면) ①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8. (현행과 같음)</p> <p><신설></p> <p><신설></p> <p><신설></p> <p><삭제></p> <p>② <u>시장은 과학관 관람객 증대, 공공목적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감면대상 및 감면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.</u></p> <p><신설></p>	<p>제6조(관람료 감면) ①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8. (현행과 같음)</p> <p>9. 「<u>국민기초생활보장법</u>」에 따라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</p> <p>10. 다동이 행복카드 소지자 및 카드에 등재된 가족</p> <p>11. <u>과학의 날·어린이 날·문화가 있는 날 방문객</u></p> <p>12. (현행 제9호와 같음)</p> <p>② <u>시장은 과학관 관람객 증대, 공공목적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.</u></p> <p>1. 「<u>국민기초생활보장법</u>」의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고,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차상위계층</p> <p>2. 「<u>한부모가족지원법</u>」 제5</p>

<p><신 설></p> <p><신 설></p>	<p>제18조(권한의 위임) 이 조례에서 정하는 시장의 권한은 관장에게 위임하며, 위임사항에 대해서는 과학관 내부 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.</p> <p><신 설></p>	<p>조의 적용을 받는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</p> <p>3. 「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7조에 따라 과학기술유공자로 지정된 사람</p> <p>4. 그 밖에 과학관 운영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</p> <p>제18조(권한의 위임) ----- ----- 권한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권한----- -----.</p> <p>1.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개관 및 휴관</p> <p>2. 제6조에 따른 관람료 감면</p> <p>3. 제10조에 따른 대관허가</p> <p>4. 제12조에 따른 대관료 감면</p> <p>5. 제13조제2항에 따른 대관에 관한 권리의 양도 승인</p> <p>6. 제14조에 따른 판매시설 등의 설치·운영</p>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	--

서울특별시립 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립 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3호 중 “(기획전시실, 세미나실 등)” 을 “(전시실, 강당 등)” 으로 한다.

제6조제1항제9호를 제12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9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9.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라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

10.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및 카드에 등재된 가족

11. 과학의 날·어린이 날·문화가 있는 날 방문객

② 시장은 과학관 관람객 증대, 공공목적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.

1.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의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고,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차상위계층

2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5조의 적용을 받는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

3. 「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7조에 따라 과학기술유공자로 지정된 사람

4. 그 밖에 과학관 운영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

제14조제3호 중 “의무실, 수유실, 유아차·휠체어 대여소” 를 “수유실, 유아차·휠체어 대여소” 로 한다.

제1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8조(권한의 위임) 이 조례에서 정하는 시장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권한은 관장에게 위임하며, 위임사항에 대해서는 과학관 내부 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1.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개관 및 휴관
2. 제6조에 따른 관람료 감면
3. 제10조에 따른 대관허가
4. 제12조에 따른 대관료 감면
5. 제13조제2항에 따른 대관에 관한 권리의 양도 승인
6. 제14조에 따른 판매시설 등의 설치·운영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</p> <p>1. · 2. (생 략)</p> <p>3. “<u>대관자</u>”란 시설물(<u>기획전시실, 세미나실 등</u>)을 이용하고자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.</p> <p>4. (생 략)</p> <p>제6조(관람료 감면)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다.</p> <p>1. ~ 8. (생 략)</p> <p><신 설></p> <p><신 설></p> <p><신 설></p> <p>9. (생 략)</p> <p>② <u>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(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</u></p>	<p>제2조(용어의 정의)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·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-----(<u>전시실, 강당 등</u>) ----- -----.</p> <p>4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6조(관람료 감면) ①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8. (현행과 같음)</p> <p>9. 「<u>국민기초생활보장법</u>」에 따라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 <u>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</u></p> <p>10. <u>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및 카드에 등재된 가족</u></p> <p>11. <u>과학의 날·어린이 날·문화가 있는 날 방문객</u></p> <p>12. (현행 제9호와 같음)</p> <p>② <u>시장은 과학관 관람객 증대, 공공목적 등을 위해 다음 각 호</u></p>

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)으로 관람료를 결제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100분의 30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.

[조례 제7108호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2항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]

제14조(판매시설 등의 설치·운영) 시장은 과학관 관람자의 편의를 위하여 과학관 내·외에 다음과 같은 시설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1. · 2. (생략)
3. 의무실, 수유실, 유아차·휠

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.

1.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의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고,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차상위계층
2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5조의 적용을 받는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
3. 「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7조에 따라 과학기술유공자로 지정된 사람
4. 그 밖에 과학관 운영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

제14조(판매시설 등의 설치·운영) -----

-----.

1. · 2. (현행과 같음)
3. 수유실, 유아차·휠체어 대

체어 대여소

4. (생략)

<신설>

여소

4. (현행과 같음)

제18조(권한의 위임) 이 조례에서 정하는 시장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권한은 관장에게 위임하며, 위임사항에 대해서는 과학관 내부 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1.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개관 및 휴관
2. 제6조에 따른 관람료 감면
3. 제10조에 따른 대관허가
4. 제12조에 따른 대관료 감면
5. 제13조제2항에 따른 대관에 관한 권리의 양도 승인
6. 제14조에 따른 판매시설 등의 설치·운영